

특집 : 방재 관련 법규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령

심 기 오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 공학박사)

1. 자연재해 관련법령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고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림1에서와 같이 많은 자연재해대책관련 법령들에 대하여 세세한 사항들보다는 전체적인 자연재해대책관련 법령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기타관련법령 발췌분에서는 자연재해법령과 관련있는 부분만을 언급 하므로써 다른법령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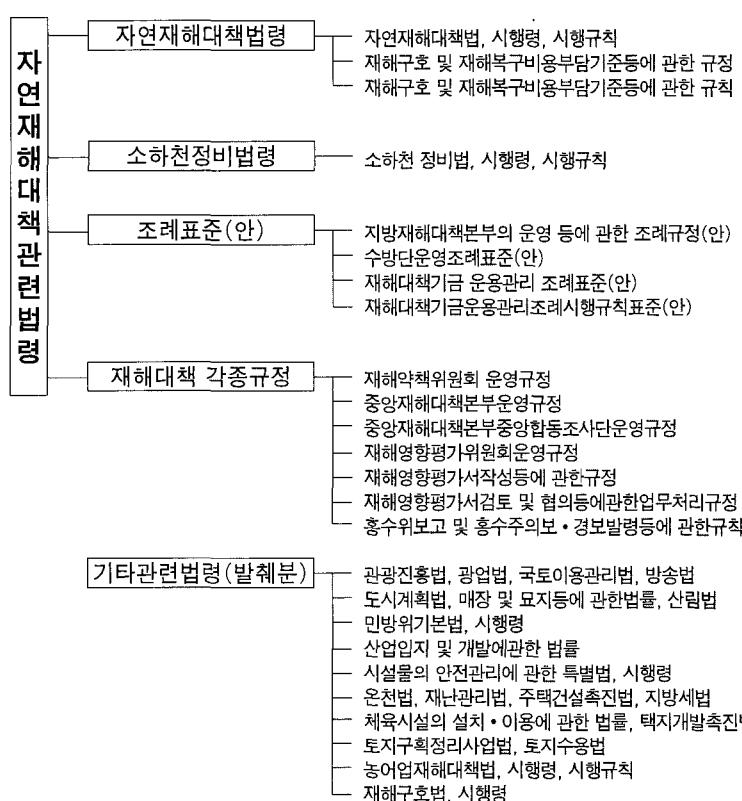


그림 1 자연재해대책관련법령집의 구성

2. 자연재해대책법령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 조직 및 방재계획은 물론,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1995년 12월 법률 제4993호로 제정되었고, 전문 제7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해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에 관해 책임이 있는 방재책임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집

자연재해대책법령은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국가의 책무, 국민의 의무, 재해대책위원회, 중앙과 지방의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방재기본계획 및 방재집행계획의 작성, 재해영향평가의 실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방재시설의 범위, 수방단의 설치기준, 재해대장 및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자격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제2항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을 보면 이재민을 위한 지원,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및 기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국고추가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3년간의 평균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국고 추가부담 또는 보조액이 명시되어 있다.

3. 소하천정비법령

이 법령에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를 지정·고시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수행해야 할 소하천의 정비와 보존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소하천의 정비를 위한 소하천의 지정기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소하천 대장 작성 및 비판리

청의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 한 소하천의 보전을 위한 소하천의 점용, 정비상태의 점검 등과 폐천부지 등의 교환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조례표준(안)

조례표준(안)에서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수방단운영조례표준(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표준(안)이 있다.

지방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서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기간 동안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수방단운영조례표준(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임무와 조직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에서는 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운용,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표준(안)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과 적립시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관련 장부(관리대장 등)의 비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5. 재해대책 각종규정

재해대책과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그림1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재해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재해대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은 조직 및 임무에서 총괄조정관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 된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해대비 체제에서는 대비체제의 구분으로써 준비체제, 경계체제 및 비상체제 등의 구분이 있다. 실무반 편성운영에서는 분석보고반, 상황관리반, 응급복구반, 대민구호반, 홍보서무반 및 행정지원반 등으로 편성하며,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중앙합동조사단운영규정에서는 중앙조사단의 임무, 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조사, 지진조사단과 재해원인분석조사단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중앙재해대책상황실운영규정에서는 자연재해관련 중앙재해대책본부상황실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실의 임무를 명시하고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는 근무반의 편성과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 및 전파에 있어서는 보고의 종류와 내용, 대규모 발생시의 조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기록협조와 근무자에 대한 인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서는 위원의 구성과 재해영향평가서의 검토, 현지조사, 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작성하는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작성지침 및 평가서 초안보완 및 설명회의 개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평가서의 구성과 작성지침, 재해영향의 예측 및 평가와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에서는 재해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심의절차와 접수, 협의내용의 결정 및 통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해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에서는 복구공사의 추진계획, 설계지원단 및 복구공사의 감독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홍수위보고및홍수주의보·경보발령등에관한규칙에서는 여러 홍수위에 대한 용어정의, 홍수주의보와 경보, 예보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관련법령 발췌분

본고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자연재해대책 관련법령집에 명시되어 있는 자연재해대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 ① 관광진흥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관광단지를 개발·조성하는 경우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 ② 광업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산지의 개발분야 중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 ③ 국토이용 관리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와 산지의 개발 분야에 있어 국토이용계획에 의거한 용도지역의 관리의무,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④ 도시계획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도시택지개발 분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분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수지 매립 분야에 있어 도시계획의 결정절차와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산지의 개발분야에 있어 공설 및 사설묘지 등의 설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⑥ 민방위 기본법 및 시행령 : 기본법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기본계획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와 관련하여 중앙협의회의 분과위원회, 각종 보상금의 지급 및 장애등급표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집

- ⑦ 방송법 : 방송법에 있어서는 방송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 ⑧ 산림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산지의 개발분야에 있어 산림안에서 입목벌채 및 채석허가 등의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 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분야에서의 국가, 지방 및 농공 단지의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 ⑩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 및 시행령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3조와 관련하여 특별법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과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⑪ 온천법 : 온천지구의 지정 및 개발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서 관광단지의 개발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 ⑫ 재난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39조와 관련하여 이상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준용 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⑬ 주택건설촉진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도시택지개발 분야에 있어 아파트지구 개발의 기본계획 수립 또는 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계획의 승인과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⑭ 지방세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관련하여 지방세의 세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⑮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⑯ 택지개발촉진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도시택지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주택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있어 도시택지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토지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인가와 조합설립의 인가 및 시행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 ⑱ 토지수용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와 관련하여 이의의 신청 및 재결의 효력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⑲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해대책의 실시 범위와 보조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과 응자일선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농업과 어업재해의 명시와 한해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⑳ 재해구호법 및 시행령 : 법에는 구호의 대상과 종류 및 협력요구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및 최저 적립액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구호대상 및 기간, 구호품의 급여한도, 주택의 응급수리 대상 및 보조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7. 맷음말

자연재해대책법령집에 있는 여러관련 법령들만을 가지고 재해를 완벽하게 자연재해에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들은 민·관·군이 협동하여 자연재해를 극복하고자 할 때만이 법령에 명시된 이상의 힘이 발생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1차적인 직접적인 피해도 크지만, 2차적인 간접적 피해를 정량화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피해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또한, 재해에 대한 예방과 책임은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 즉, 너와 나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